



◎ 고 시

제 452 호 :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및건축계획  
승인..... 12

제 453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3

제 454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3

제 455 호 : 도시계획미관지구(3층)지적승인..... 14

제 456 호 :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지적승인..... 14

제 457 호 : 도시계획미관지구결장..... 15

제 458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지적승인..... 15

제 459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인가..... 16

◎ 공 고

제 357 호 :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건축계획및관리처분계획공람  
공고..... 18

제 358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실시계획공람공고..... 18

제 359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실시계획공람공고..... 20

제 361 호 : KS 표시허가취소처분공고..... 21

제 363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공람공고..... 22

제 364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26

◎ 정 정

규 칙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물정비 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원  
1979년 10월 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826호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물정비 사업 보조금 지급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보조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2 항중 제 1 호 및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 개 이상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조금 지급대상 건물 면적은 조례 제 4 조 제 2 항의 사업시행 당시에 계획된 도시계획상 봉도지역의 전폐율(공원용지는 풍치지구의 전폐율) 범위내에서 산정 지급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9년도 무허가 건물철거 보조금 지급 방침이 결정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이 규칙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원  
1979년 10월 30 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827호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중 " 200 원 " 다음에 " 300 원 " 을 삽입하고 " 10 종 " 을 " 11 종 " 으로 한다.  
300 원권의 규격과 모양은 도형 제 1 호로 하고 색채는 짙은 회색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위원회 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원  
1979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828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위원회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위원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중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위원은 기획관리관, 내무국장, 제  
무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축국장, 주  
택국장, 공인노조국장, 도로국장, 하  
수국장, 수도국장이 된다. 다만,  
위원이 아닌 관계국장(관 및 직  
한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은 소관  
사무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 9631 : 79.  
9.26)에 따라 기구 개편된 국  
장은 이 규칙에 의한 위원으로  
본다.

훈 령

서울특별시 세무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중 재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  
령한다.

1979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원

◎서울특별시훈령제 512호

서울특별시세무공무원인사  
관리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세무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 제 2호중 "세무 1과, 세무 2  
과"를 "세무행정과, 과징과"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제  
9,631호 : 79. 9.26) 시행일로 부  
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세입금 과징기관과 공  
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  
령한다.

1979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원

◎ 서울특별시훈령제 513호

서울특별시세입금과징기과과공무원의  
실적관리및평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세입금 과징기과과 공  
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2 항중 "세무 1 과장" 을  
"과징과장" 으로 한다.

제 3 조 제 1 항중 "세무 1 과장" 을  
"과징과장" 으로 한다.

제 5 조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⑤세무행정과장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주관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대통령령제  
9,631 호 79. 9.26 ) 시행일로 부터  
적용한다.

(별표 1)

1. 도 로

서울특별시 구의 공공시설관할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  
이 발령한다.

1979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인

◎ 서울특별시훈령제 514호

서울특별시구의 공공시설관할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구의 공공시설 관할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중 "(구 및 출장소)" 를  
삭제하고 (별표 1) 를 별지와 같  
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 다만, 구로구 및 동작구와 관  
련된 사항은 1980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순위	명 칭	위 치	해 당 청	관할청	한 계
1	의 주 로	서소문네거리-서대문 네거리	중 구 서대문구	서대문구	폭은 건축선까지
2	의 주 로	서대문네거리-무악재	중 로 구 서대문구	서대문구	"
3	청 계 로	동아일보앞-조흥은행 본점앞	중 로 구 중 구	중 로 구	"

순위	명 칭	위 치	해 당 청	관할청	한 계
4	정 계 로	조흥은행 본점 - 마장교	종 로 구 중 구 동 대 문 구 성 동 구	종 로 구 중 구 동 대 문 구 성 동 구	행정구역 관할구 에서 관리
5	난 계 로	성동중고교 - 청계로	중 구 성 동 구	성 동 구	북은 건축선까지
6	난 계 로	보문동 7 가 - 신설동로타 리 - 청계로	종 로 구 동 대 문 구	동 대 문 구	"
7	충 정 로	문화방송국 - 서대문로타 리	종 로 구 중 구	종 로 구	"
8	만 리 로	서부역 - 마포구경계	중 구 용 산 구	용 산 구	"
9	안 암 로	대광중고교 - 안암동로타 리 - 종암대교	동 대 문 구 성 북 구	성 북 구	"
10	천 호 내 로	마장교 - 장안평 - 균자교	동 대 문 구 성 동 구	동 대 문 구	"
11	미 아 로	미아삼거리 - 구충인출장 소입구	성 북 구 도 봉 구	도 봉 구	"
12	미 아 로	미아 3 거리 - 신장위동	성 북 구 도 봉 구	성 북 구	"
13	신 촌 로	서소문네거리 마포구경계	중 구 서 대 문 구	서 대 문 구	"
14	신 촌 로	마포구경계 - 동교동로타 리	서 대 문 구 마 포 구	서 대 문 구	"
15	연 희 로	동교동로타리 - 경의선 철도	서 대 문 구 마 포 구	서 대 문 구	"
16	대 방 로	대방동로타리 - 도림천 (구경계)	영 등 포 구 동 작 구	동 작 구	"
17	시 흥 로	도림천 (구경계) - 시흥 인터체인지	관 약 구 구 로 구	관 약 구	"

순위	명 칭	위 치	해 당청	관할청	한 계
18	남부순환도로	시흥인터체인지-관악구 경계	관악구 구로구	관악구	폭은건축선까지
19	남부순환도로	사당동네거리-봉천동구 경계	관악구 동작구	관악구	"
20	동작대로	동작대교남단-남부순환 도로	강남구 동작구	동작구	"
21	"	남부순환도로-남태령	강남구 관악구	관악구	"

2. 고가도로

순위	명 칭	위 치	해 당청	관할청	한 계
1	3.1고가도로	조흥은행본점-동대문	종로구 중 구	종로구	고가도로 전부
2	"	동대문-청계로 8 가	종로구 중 구	중 구	"
3	"	청계로 8 가-마장교	동대문구 성동구	성동구	"
4	아현고가도로	충정로 3 가-북아현동	서대문구 마포구	마포구	"
5	독립문 고가도로	교북동-현저동	서대문구 종로구	서대문구	"
6	사천고가도로	연희동-성산동	마포구 서대문구	마포구	"

3. 육 교

순위	명 칭	위 치	해 당청	관할청	한 계
1	서 소 문 차도육교	중앙일보사앞-서대문구 청앞	중 구 서대문구	서대문구	육교의 전부
2	서 대 문 차도육교	서대문중청로 3 가-척십 자병원앞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서대문구	"

순위	명 칭	위 치	해 당청	관할청	한 계
3	신 설 동 차 도 유 교	신설동로타리	종 로 구 동대문구	동대문구	육 교 의 전 부
4	대 방 동 유 교	대 방 아 파 트 앞	영 등 포 구 동 작 구	동 작 구	"
5	대 방 동 유 교	서 울 공 고 앞	영 등 포 구 동 작 구	동 작 구	"
6	고 대 앞 유 교	고 대 앞	동 대 문 구 성 북 구	성 북 구	"
7	대 광 고 교 앞 유 교	대 광 고 교 앞	동 대 문 구 성 북 구	동 대 문 구	"
8	신 대 방 동 9 길 이 파 트 앞 유 교	신 대 방 동 9 길 이 파 트 앞	영 등 포 구 동 작 구	동 작 구	"
9	사 당 동 유 교	서 문 어 중 앞	강 남 구 동 작 구	동 작 구	"
10	청 계 로 유 교 ( 상 가 )	청 계 천 4 가	종 로 구 중 구	중 구	"
11	"	청 계 천 5 가	"	"	"
4. 터 널					
순위	명 칭	위 치	해 당청	관 할청	한 계
1	삼 청 터 널	삼 청 동 산 2 의 1 - 성 북 동 산 25-1	종 로 구 성 북 구	종 로 구	시 설 불 전 부
2	북 약 터 널	정 능 동 산 87 의 1 - 평 창 동 산 6 의 2 백	종 로 구 성 북 구	성 북 구	"
3	남 산 1 호 터 널	예 장 동 산 5 의 6 - 한 남 동 산 10 의 33	중 구 용 산 구	중 구	"
4	남 산 2 호 터 널	장 중 동 2 가 산 7 의 22 - 용 산 동 2 가 282 의 289	중 구 용 산 구	중 구	"
5	남 산 3 호 터 널	회 현 동 49 - 이 태 원 동	중 구 용 산 구	중 구	"



## 5. 지하도

순위	명 칭	위 치	해 당 청	관 할 청	한 계
1	독립문지하도	서대문구와종로구와의 경계	종로구 서대문구	서대문구	지하도의 전부

## 6. 교 량

순위	명 칭	위 치	해 당 청	관 할 청	한 계
1	제 1 한강교	용산구와관악구와의경계	용산구 동작구	용산구	교량의 전부
2	제 2 한강교	마포구와영등포구와의 경계	마포구 영등포구	마포구	"
3	제 3 한강교	용산구와강남구와의경계	용산구 강남구	용산구	"
4	서 물 대 교	마포구와영등포구와의 경계	마포구 영등포구	마포구	"
5	영 동 교	성동구와강남구와의경계	성동구 강남구	성동구	"
6	잠 실 대 교	성동구와강동구와의경계	성동구 강동구	성동구	"
7	광 진 교	"	성동구 강동구	강동구	"
8	천 호 대 교	"	성동구 강동구	강동구	"
9	중 압 대 교	정 능 천	동대문구 성북구	동대문구	"
10	안 압 교	성 북 천	동대문구 성북구	성북구	"
11	잠 수 교	용산구와강남구경계	용산구 강남구	용산구	"
12	양 화 교	안양천 (공항로)	영등포구 강서구	강서구	"
13	오 목 교	안양천 (오목로)	"	영등포구	"

순위	명칭	위치	해당청	관할청	한계
14	성수대교	성동구와강남구와의경계	강남구 성동구	강남구	교량의 전부
15	도림교	영등포구와구로구와의 경계	영등포구 구로구	영등포구	"
16	구로교	영등포구와구로구와의 경계	영등포구 구로구	영등포구	교량전부
17	신도림교	영등포구와구로구와의 경계	영등포구 구로구	영등포구	"
18	동작교	강남구와동작구와의경계	강남구 동작구	동작구	"
19	반포교	"	"	"	"
20	이수교	"	"	강남구	"
21	삼성교	남서울대 운동장앞	강남구 강동구	"	"
22	청담교	"	"	"	"
23	수색교	은평구와마포구와의경계	은평구 마포구	은평구	"
24	마장교	신림 4동 517	관악구 동작구	관악구	"

7. 하천

순위	명칭	위치	해당청	관할청	한계
1	한강	성동구와강동구와의경계	성동구 강동구	성동구 강동구	구계까지 행정구역 관할구에서 관리
2	"	성동구와강남구와의경계	성동구 강남구	성동구 강남구	"
3	"	용산구와강남구와의경계	용산구 강남구	용산구 강남구	"
4	"	용산구와동작구와의경계	용산구 동작구	용산구 동작구	"

순위	명칭	위치	해당청	관할청	한계
5	한강	마포구와영등포구와의경계	마포구 영등포구	마포구 영등포구	구계까지행정구역 관할구에서 관리
6	"	마포구와강서구와의경계	마포구 강서구	마포구 강서구	"
7	중량천	면목동구경계군자교	동대문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동구 제방부지 까지
8	탄천	강남구와강동구와의경계	강남구 강동구	강남구 강동구	능천좌안, 능천우안
9	북동천	북동교 상류	동대문구 도봉구	도봉구	중량천합류지점 상류측 전부
10	불광천	증산교와산교	서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구증산교상류측
11	정능천	종암대교상류	동대문구 성북구	성북구	종암대교 상류측 전부
12	안양천	영등포구와강서구와의경계	영등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강서구	안양천 우안 안양천 좌안
13	도림천	영등포구와구로구와의경계	영등포구 구로구	영등포구 구로구	도림천 우안 도림천 좌안
14	신림천	동작구와관악구와의경계	동작구 관악구	관악구	신림천 전부
15	국립묘지앞 한강지류	강남구와동작구와의경계	동작구 강남구	동작구 강남구	좌안, 우안

8. 녹지대

순위	명칭	위치	해당청	관할청	한계
1	의주로분리대	의주로 파출소앞- 서대문경찰서앞	종로구 서대문구	서대문구	녹지대의 전부
2	독립문녹지대	독립문	종로구 서대문구	"	"

순	명칭	위치	해당청	관할청	한계
3	동교동녹지대	동교동로타리	서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녹지대의 전부
4	신촌로타리 녹지대	신촌로타리	서대문구 마포구	마포구	"
5	도로분리 녹지대	동아일보-광고간	종로구 중구	종로구	"
6	"	신남국교앞-군자교간	동대문구 성동구	동대문구	"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452호

주택개발을위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및건축계획승인

1. 주택개발을위한 재개발사업 관리  
처분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공고제 263호(79.8.3)로 공  
람한바 있는 용산1구역내 16, 35,  
36, 37, 38, 39, 7개구획에 대하여  
나. 건축계획

1) 건축물의규모

구분	층수	건축면적 (세대당)	거래율	용적율	비고
단독주택	2층	50 이상	50% 이하	200% 이하	
공동주택	"	33 "	50% "	150% "	
"	3층	"	35% "	150% "	
아파트	8층	60 "	18% "	200% "	

관계인 의견서 심사후 일부계획을  
변경하고

2. 도시재개발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건축법제33조의2와 동법  
시행령제5조에 의거 다음과같이  
동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건축  
계획을 승인한다.

3. 고시내용

가. 관리처분계획: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하며 관계도  
서는 서울시청 건축국 재개발2과  
와 관할구청시민홀 및 주택과에  
비치 열람함.

2) 건축물의모양

건축물의 평면은 구역전체 경 관조성에 적합한형으로 하며 지붕은 박공 및 모임형으로 하여야 한다.

3) 건축방법

주민자력에 의하여 당시 지 점업체로 하여금 건축함.

4) 건축기간 및 합의기간

건축기간: 79.10.15-80.3.30 (단, 합의는 79.11.15 까지)

5) 기타사항은 동구역 건축계획 승인서와 건축법 및 관계법령 준용함.

1979.10.24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고시제 45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제 437 호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 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제 41 호(77.3.16)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10.25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조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중 점	비고
신설	중로	2		15	40	후암 96	후암 96	

◎서울특별시고시제 45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제 145호(78.6.15)로 결정고시된 당시과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제 41 호(77.3.16)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과합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10.26

서울특별시장

○ 도로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광로		64	40m	4150m	서초동(84호광장)	사당동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455 호

도시계획미관지구 (3종)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 28 호 (79.7.23) 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 미관지구 (3종)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제 41 호 (77.3.16) 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

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와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10.29

서울특별시장

가. 지적승인조서

구분	종별	연장	면적	위치	비고
신설	3종	1,020m	40,800평방미터	치신동 107-청운동 108	양측 20미터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456 호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제 262 호 (79.7.16) 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공원)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제 41 호 (77.3.16) 의 권한위임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고 이

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와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10.30

서울특별시장

가. 지적승인 조서

구분	번호	공원명	위치	면적 ( 평 방 )			비고
				기 점	변 경	변경 후	
변경	근01-08	파고다공원	종로구 종로 2 가 38	18,961	증678	19,639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57 호

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미관지구들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 '77.3.16 ) 권한  
위임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  
고 이를 고시한다.

1979.10.30

서울특별시장

○ 미관지구 결정조서

구분	종 별	연 장	면 적	위 치
기정	제 2 종	300 m	7,200 m	강동구 송파동 38 광장 - 송파동 451 부력 송파동광로 23, 성내동광로 22, 풍납동 대로 34
	제 4 종	4,950 m	118,800 "	
변경	제 5 종	집 단	1,198,650 "	강동구 둔촌동, 이동, 오금동 일대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58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공공지 )  
지 적 승 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 호 ( 79.1.  
18 ) 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공공지 )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 77.3.16 ) 권한위임에 따라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세대권 구청 도시정  
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  
인다.

1979.11.1

서울특별시장

가. 로신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2		8 m	1.4 m	연희동 149-1	연희동 148-8	

나. 공공공지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공공공지	연희동 149-1	96 m <sup>2</sup>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59 호

도로계획사업 (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인가

1. 고시 제 3 호 ( 1969.1.18 ) 로  
시설결정 및 인가증인된 도시계획  
사업 ( 녹번동 6301 도로신설 ) 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관련규칙 고시 제 41 호  
( 77.3.19 )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시민봉사실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10.

서울특별시

다 음

1. 사업시행지 : 은평구응암동 65번지 1 호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로및하수도

3. 사업의규모 :

도로 B = 6 m L = 90 m

하수도 ( 폭관 D 600 : 84 m

암거 2 × 2 : 67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은평구청장 )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착수 : 실시계획인가일 '79.9.25 ~ '79.12.25

준공예정 : 1979.12.25

6. 인가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  
외의 권리명세 별첨토지조서 참조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토지조서 참조  
( 인가조건 )

별첨 개략설계도서 ( 평면도 ) 에 의하여  
시공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토 지 조 서

순번	토지소재지		지복	저축평수	소유자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1	녹번동	75-1	대	6.05	녹번동 75-1	전이선	
2	"	75-7	"	6.35	수원 519-174	박준용	
3	"	75-8	"	10.89	녹번 75-18	김충선	
4	"	75-9	"	6.65	응암 283	정덕유	
5	"	75-38	"	4.84	녹번 75-38	김영민	
6	"	73-8	"	4.84	" 75-4	성춘근	
7	응암동	63-1	"	2.1	" 134-4	유정근	
8	"	61-86	"	3.02	불광동 230-25	황종성	
9	"	61-85	"	10.89	"	"	
10	"	61-50	"	16.94	응암동 61-50	김영신	
11	녹번동	73-2	"	59.43	녹번동 75-4	성춘근	
계				132			

건 물 조 서

순번	건물소재지		지복	저축평수	소유자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1	녹번동	75-1		1	녹번동 75-1	전이선	
2	"	75-7		2	" 75-7	박희옥	
3	"	75-8		2.5	" 75-8	김충선	
4	"	75-9		1.5	" 75-9	곽종희	
계				7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357 호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건축  
계획및관리처분계획공람공고

1. 서울시 고시 제 212 호 (76.9.4) 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쌍문 1, 2 구역 (도봉구쌍문동 368, 413, 414 번지 및 374 번지일대 44,777 평) 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 및 42 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법 제 33 조의 2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과 부합되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일로 부터 30 일간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
3. 관리처분계획은 개별 통보하며 관계도서는 건축국 재개발 2 과 관할구청 주택과에 비치 열람하고 있음.

1979.10.25

서울특별시 장

㉠ 서울특별시 공고제 358 호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41 호 (77.

9.26 ) 및 동고시 제 365 호 (77.10.19) 는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 학교 양목국민학교 )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 시행허가 ) 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10.26

서울특별시 장

공 램 개 요

1. 사업시행지 : 강서구신정동경인지구 10-1 구획의 2 구획 ( 56-3 의 33 필지 )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명칭 : 양목국민학교
3. 사업의규모 : 4,572.9 평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가. 착수에정일 : 79  
나.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 부터 1년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 : ( 별첨조서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14 조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토 지 조 서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소유자및이해관계인주소, 성명	비 고
강서구 신정동	56-3	전	342평	서울특별시	경인환지지구
	377-7	"	260	"	
	-27	답	191	"	
	-38	임	1,445	"	
	377	전	212	"	
	377-43	"	116	"	
	-8	"	117	"	
	-36	임	1,111	"	
	-46	"	97	"	
	-45	"	152	"	
	-44	전	159	"	
	-21	"	99	"	
	-19	"	222	"	
	-37	임	71	"	
	-84	"	87	"	
	-85	"	64	"	
	-88	"	69	"	
	-87	"	72	"	
	-86	"	64	"	
	-89	"	66	"	
	-90	"	60	"	
	-91	"	63	"	
	-92	"	66	"	
-95	"	60	"		
-94	"	63	"		
-93	"	66	"		
-96	"	66	"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소유자및이해관계인주소, 성명	비 고
강서구신정동	377-97	임	60평	서울특별시	경인환지지구
	-98	"	63	"	
	-99	"	64	"	
	-100	"	98	"	
	-101	"	98	"	
경인채비지	11-3가		240.4	"	
		도로	440	" (도시행정과)	
		계	4,572.9평		

◎ 서울특별시 공고제 359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  
허가실시계획공람공고

공 략 개 요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655 호 (78. 12.14) 및 동고시 제 182 호 (79.5.4)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학교 정목국민학교)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시행허가)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 사업시행지: 강서구목동 경인 2 차 지구 162-2 가 구획외 7 ( 산 59 , 산56-14 , 산56-15 , 162-2가, 산60, 162-3가, 265 ; 산 58 , 162-4가) 도로
2.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명칭: 정목국민학교
3. 사업의규모: 4,347 평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가. 착수에정일: 79  
나. 준공예정일: 착수일로 부터 1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14 조의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1979.10.26

서울특별시장

위 치	구지번	지목	환지번	지 적	사용토지	소유자및이해관계인주소성명	비 고
강서구목동 (경인 2 차지구)	산 59	임	162-2 가	778.5평	778.5평	동대문구이문동 257-240 이근영	환지지구
			162-3 나	477.8	477.8		
			163-3 다	554	554		
	산 56-14	임	162-2	190	16	강서구목동 25-3 전기수	
	산 56-15	"	"	190	40	도봉구미아동 473-14 전백진	
	162-2 가		162-2 가	519.7	519.7	국유지 ( 도시행정과 )	
	산 60	임	162-3 가	143.6	143.6	서울특별시	
			162-4 나	489.2	489.2	"	
	265	전	162-4	353	353	"	
	162-3 가		162-3 가	384.8	384.8	국유지 ( 도시행정과 )	
	산 58	임	162-4	79.2	79.2	영등포구양평동 4 가 114 김수봉	
	162-4 가		162-4 가	575.8	126	국유지 ( 도시행정과 )	
	도로			385.2	385.2	서울특별시 ( 도시행정과 )	
	계			13필지		4,347평	

◎ 서울특별시 공고 제 361 호

KS 표시허가취소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제 1 항이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허가를 취소처분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79.10.27.

서울특별시 장

1. 허가번호 : 제 1525 호
2. 허가일자 : 1977. 7. 30.

3. 제조업체명 : 대한전선(주)
4. 대표자 : 최 형 규
5. 소재지 : 서울영등포구독산동 738
6. 규격번호 : KSC 4802
7. 품 명 : 고압 및 특별 고압진상 컨덴서
8. 종류, 등급 : 3상 3,300V (3,300V) 10, 15, 20, 25, 30, 57, 75, 100, 150, KVA  
단상 3,300V(3,300V) 10, 15, 20, 25, 30, 50, 66.7, 75, 83.4, 100, 167, KVA  
3상 6,600V(6,600V) 10, 15, 20, 25, 30, 50, 75, 100, 150 KVA

단상 6,600V(6,600V) 10,15,20,  
25,30,50,66.7,75,83.4,100,167 KVA  
3상 3,300V 16,600V (3,300V,  
16,600V) 10,15,20,25,30,57,75  
100,150 KVA  
단상 6,600V(11,400V) 100 KVA  
단상 6,600V(22,900V) 50,100,  
167 KVA

9. 취소사유 : KS 표시허가자진반납

10. 취소일자 : 1979.10.27

### ◎ 서울특별시 공고제 363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98 호 ( 78.3.15 ) 및 동고시 제 510 호 ( 78.9.29 ) 로 사실결정 및 지적승인된 강남구 서초동 1113 번지 일대 학교 시행사업구간내 저촉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본 공고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9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장

#### ( 공 랑 개 요 )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 서초동 1113 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

다. 사업의 규모 ( 면적 ) : 74,381

( 22,500 평 )

라.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 착수예정일 : 1979.11.

2) 준공예정일 : 1980.10.

바.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아.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

자.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 56-8972 ) 로 문의바람.

토 지 명 세 서						
학교명 : 서울고등학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영동1지구(반포동)	749-1 마	대	67.7평	서울특별시		
"	" 바	"	86.1	"		
"	" 사	"	60	"		
"	" 아	"	52.5	"		
"	" 자	"	19.5	"		
"	753-1	"	69	"		
"	755-1	"	130.5	"		
"	755 (공원)	"	300	"		
"	756-1 가	"	127	"		
"	" 나	"	127	"		
"	751 나 (418)	"	152.5	"		
"	752(390-4)	"	89.4	"		
"	754(414-1)	"	354	"		
"	754 (418)	"	364.3	"		
"	746-1	"	141	"		
"	747-2	"	105.2	"		
"	749-1 가	"	76.5	"		
"	" 나	"	72.3	"		
"	" 다	"	71	"		
"	" 라	"	71.4	"		
영동1지구(서초동)	757(1111-1)	"	100	"		
"	" (1111-2)	"	288	"		
"	" (1111-7)	"	96.4	"		
"	" (1111-8)	"	100	"		

소 제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 고
영동1지구 (반포동)	733(400-1)	대	211.9 평	서울특별시	
"	733나(401-3)	"	142.5	"	
"	747(390-2)	"	187.5	"	
"	751라 <sup>(386-1)</sup> <sub>(387-1)</sub>	"	303.3	중구주자동49-2산세훈	
"	751가(389)	"	139.8	서울특별시	
"	751(414-2)	"	108	"	
영동1지구 (서초동)	755다(1115-2)	"	863.8	"	
"	756(1110-1)	"	232.1	"	
"	"(1159-1)	"	202.9	"	
"	"(1159- <sup>3</sup> / <sub>5</sub> )	"	139	"	
"	"(1159- <sup>4</sup> / <sub>6</sub> )	"	139	"	
"	"(1159-7)	"	139	"	
"	"(1160-3)	"	104.1	"	
"	"(1160-4)	"	125.6	"	
"	757(1110-2)	"	54	"	
"	757(1110-3)	"	192	"	
"	752나(1162)	"	150.5	"	
"	753(1113-2)	"	183.2	"	
"	"(1113-2)	"	230.7	"	
"	"(1114)	"	261	"	
"	"(1114-1)	"	229	"	
"	754(1109-4)	"	205.5	"	
"	"(1109- <sup>5</sup> / <sub>6</sub> )	"	648.4	"	
"	"(1112)	"	101	"	
"	755(1112)	"	392.4	"	
"	754(1113-4)	"	192.2	"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 고
영동1지구(서초동)	751(1197-2)	대	154.3	서울특별시	
"	751(1107-3)	"	154.3	"	
"	751(1109-2)	"	267.3	"	
"	751(1109-3)	"	84.9	"	
"	751(1160-1)	"	291.7	"	
"	752(1160-2)	"	375.2	"	
"	752(1161-1)	"	155.6	"	
"	752(1161-3)	"	117	"	
"	752(1161-4)	"	117	"	
"	752가(1162)	"	181.1	"	
"	747가 (1098, 1098-1)	"	331	"	
"	747나 (1098, 1098-1)	"	234	"	
"	748 (1098, 1098-1)	"	430.9	"	
"	747 (산 156-23)	"	262.8	"	
"	749(1108)	"	413.9	"	
"	749(1109-1)	"	194.6	"	
"	750가 (1103-2, 산 156-3)	"	553.2	"	
"	751나 (1103-2, 산 156-3)	"	312.4	"	
"	750가 (산 156-4)	"	690.2	중구신당동 353-45 시귀속외 1인	
"	751(1102-7, -8)	"	71.4	"	
"	748나 (1102-2, 3, 4, 1103-1)	"	362.3	"	
"	746 (산 156-12)	"	281.6	"	
"	746가 (산 156-14, -15)	"	272.4	"	
"	746 (산 156-21)	"	101.6	"	
"	747(1100-1)	"	220.5	"	
"	747(1100-2)	"	337.9	"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 고
영동1지구 (서초동)	747(1100-3)	대	102.2	서울특별시	
"	747(1079)	"	98.5	"	
"	748가 (1106,1107-1)	"	427.1	"	
"	751나 (1106,1107-1)	"	127.4	"	
"	735(1097)	"	730	"	
"	733(1113-1)	"	102.4	"	
"	733(1113-5)	"	80.6	"	
"	733(1113-6)	"	66.6	도봉구수유동169-79 김상규	
"	746(7101)	"	89.8	서울특별시	
"	746가 (1102-1,1105)	"	156.2	"	
"	746나 (1102-1,1105)	"	278	"	
"	748다 (1102-1,1105)	"	316.3	"	
"	746가 (1102-2,-3)	"	253.5	"	
"	1103-1,4 746나 (1102-2,3,4,1105-1)	"	250.1	"	
영동1지구 (반포동)	756-1다	"	104.3	"	
"	756-2	"	162	"	
"	도 로	도	3,166.1	"	
계	93 필		22,507평		

◎ 서울특별시 공고제 364 호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 사용 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  
한다.

1979.10.

서울특별시 장

1. 공 인 명 : 서울특별시시영주택  
건설자재, 분임물품  
출납원인
2. 사용개시일 : 1979.10.30
3. 공인의인명 :

인  
영



공 인 명 서울특별시 시영주택건설자재 분임물품 출납원인

정 정

시보 제 735 호 (79.10.16) 에 게재된 서울특별시조례 제 1365 호 제 3 조 제 1 항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 분	패지	오 류	정 정
조례제 1365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채조례 중 개정조례	71-3	제 3 조 ( 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 (1) 지하철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지하철도 건설촉진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상수도 공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공채를 매입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해당액의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 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 (1) - - - - - - - - - - 과동 - 다만, 건설공사의 지하철 공채 매입금액 중 지하철 건설공사가 아닌 기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100분의 2로 하며 (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은 지하철 공채를 매입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상수도 공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공채를 매입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해당액의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본다.

1979.10.

서울특별시장